

**Advance Edited Version**Distr.: General  
11 January 2021

Original: English

**인권이사회****제 46차 회기**

2021년 2월 22일 – 3월 19일

의제 2 및 4

유엔 인권최고대표 연례 보고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사무총장 보고  
이사회의 주의를 요하는 인권 상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요약**

인권이사회 결의 40/20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이행한 활동을 담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기술한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해당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관련 국제 법적 기준에서 살펴본다.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회원국, 인권이사회 및 총회와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권고로 마무리한다.

## I. 서문

1.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 40/20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인권이사회는 결의 40/20를 통해 인권최고대표로 하여금 책임 규명에 관한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 이행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인권이사회 제 46차 회기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권고는 기존의 모니터링 및 기록 노력 강화, 중앙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repository) 구축, 그리고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 법적 책임 규명 전문가가 정보 및 증언을 모두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인권이사회 결의 34/24 및 40/20 이행을 위해 수행한 활동을 담으며, 그간의 성과 및 도전과제에 주목한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관해 수집한 내용을 관련 국제 법적 기준에서 살펴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다수의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고 여전히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일관된 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가 결의 34/24를 통해 부여하고 결의 40/20를 통해 연장한 위임권한의 연장을 고려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위임권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II. 배경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14년 발간한 보고서(A/HRC/25/63)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침해 행위의 중대성, 규모, 그리고 성질을 보건데, 현대 사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국의 인권 상황 대응을 위해 국제공동체 전체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위원회가 명시한 반인도범죄는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에 근거한 박해, 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굶주림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수반했다.
5.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권이사회는 결의 25/25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강화, 책임 규명 보장, 협력 및 역량 강화 증진, 인권 상황의 가시성 유지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요청했다. 인권이사회는 2016년 결의 31/18을 통해 인권최고대표로 하여금 독립 전문가 그룹(이하 “독립전문가그룹”)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독립전문가그룹의 설립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특히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게 진실과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6. 독립전문가그룹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A/HRC/34/66/Add.1)에서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책임 규명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에는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임시 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그리고 보편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범죄를 기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7. 또한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향후 형사재판에 대비하여 기초작업을 강화하도록 국제공동체에 권고하였다. 이는 추가 자원 확보를 통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강화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해당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보다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했다.

8. 인권이사회는 결의 34/24에서 2년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서울 현장사무소(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의 관련 권고를 이행하도록 했다. 해당 권고는 기존의 모니터링 및 기록 노력 강화, 중앙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 구축, 그리고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활용될 전략 마련을 위해 법적 책임 규명 전문가가 정보 및 증언을 모두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인권최고대표는 2019년 3월에 결의 34/24의 권고 이행 성과를 담은 보고서(A/HRC/40/36)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특히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내 책임 규명 전담 조사팀 설립에 대한 성과를 기술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 40/20을 통해 해당 책임 규명 전담 조사팀 활동을 2년 더 연장했다.

10. 인권최고대표는 2020년 3월에 결의 40/20에 의거하여 인권이사회에 구두 보고를 했다.<sup>1</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모니터링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금 시설 내 여성과 여아 대상 성폭력을 비롯한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권최고대표는 말했다.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 및 회원국에게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책임 규명 전략 방안을 지원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동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해당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관련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유엔 총회에 최근 제출한 보고서(A/75/388)에서 특별보고관은 정의 실현 또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있어 개선이나 진전의 신호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가능한 모든 책임 규명 방안을 살피는 동시에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총회에 최근 제출한 보고서(A/75/271)에서 회원국을 비롯한 여타 이해관계자가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등 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환영했다.

12. 이렇게 계속되는 책임 규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여타 정치적 우선순위로 인해 국제공동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관심을 덜 두는 상황이 빚어졌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마지막으로 해당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 받은 해는 2017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불처벌의 고리를 끊는 것은 정의 구현 및 인권 침해 예방 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1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9월 28일 결의 34/24 및 40/20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구상서(note verbale)를 전달했다. 구상서는 인권최고대표가 2019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첫 서면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위해 해당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법치주의 개혁과 관련 모범 사례 등에 관한 협력방안 논의 및 정보 교류의 기회가 있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를 해당 정부와 공유하며 의견을 요청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보고서를 거부한다고 답변하였다.

### III. 인권이사회 결의 34/24 및 40/20 이행

14.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조가 부재하고 해당국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나, 이에 불구하고 위임권한 이행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15.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전담 법적 책임 규명 전문가로 이루어진 핵심 조사팀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 침해에 관한 다양한

<sup>1</sup> [www.ohchr.org/EN/HRBodies/HRC/Pages/NewsDetail.aspx?NewsID=25697&LangID=E](http://www.ohchr.org/EN/HRBodies/HRC/Pages/NewsDetail.aspx?NewsID=25697&LangID=E) 참조.

출처의 정보 및 증거를 파악, 수집, 보존하고, 수집한 정보를 특히 국제 형사법 기준으로 분석하며,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 및 관리할 전자 저장소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이 개선되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보 공유, 역량 강화, 책임 규명 전략 모색 등을 목적으로 정부 대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단체, 사법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상기 활동은 향후 국제 책임 규명, 국내 책임 규명 또는 그들이 조합된 형태의 책임 규명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수 발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최근 도착한 이들과의 면담은 해당국 내에서 자행된 잠재적 인권 침해에 대한 주요 정보 출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이의 수는 크게 줄었으며, 대유행 관련 이동 제한 조치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1,047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이하 “이탈자”)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에 비해 2020년 첫 9개월 동안 도착한 이는 195명이라고 잠정 발표하였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착 시설에 최근 도착한 이들과의 면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중단되었다.

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신규 직원 배치가 상당 기간 지연됐으며, 유엔 정기 예산의 재정 상황이 국내 직원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교류나 예정되었던 역량 강화 및 교류 활동은 가능한 선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했다.

## A. 모니터링 및 기록 노력 강화

18.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개인 또는 국가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국가 기관의 명령 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인권 침해 피해자 및 증인과 면담을 계속 진행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2015년 개소한 이래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여 최근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들과 400 건 이상의 면담을 대부분 대면으로 실시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면담을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면담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전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19.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공받은 증언 각각의 진실성, 신뢰성과 신빙성을 평가했다. 특히 증언 자체의 일관성 및 연결성과 더불어 유사한 사실 관계와 양상이 언급된 다른 증언 내용과의 일관성도 살폈다. 평가 과정에서 편견의 가능성과 가용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평가 내용의 일관성을 한층 더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해 공개된 정보 및 시민사회단체의 분석 내용을 활용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관련 국제 형사법 기준에서 정보를 분석했으며, 특히 특정 국제 범죄의 구성 요건에 집중했다.

20.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자 면담 및 공식 서한 송부를 통해 정부 운영 재정착 시설에 최근 도착한 이탈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2020년 2월까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재정착 시설에 최근 도착한 남성 이탈자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남성 이탈자에 대한 접근은 2월에 허용되었으나, 동시에 여성 이탈자와 허용된 면담 횟수가 30 퍼센트 감소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해 면담 허용 시간은 두 시간에서 한 시간 반으로 줄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위임권한을 최선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재정착 시설 면담대상자에 유의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21.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책임 규명 노력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 국민의 납치 관련 정보와, “지상낙원” 사업의<sup>2</sup> 일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한

<sup>2</sup> “지상낙원” 사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인의 “복숭”을 선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식 진행 기간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였으며, 이 사업으로 총 93,340 명이 대부분

한인과 일본 국민에 대한 박해와 강제 실종 관련 정보도 수집 대상이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부 관계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만나고,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행사를 지원했다. 덕분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본에 근거지를 둔 시민사회, 변호사, 여타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22.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한민국 거주 이탈자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책임자 위치였으며 명령체계 및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을 만한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면담을 진행하고자 다양한 상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범죄 혐의와 명령체계 간의 연결고리 및 해당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3.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부, 시민사회, 언론, 학계가 인권 침해와 잠재적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개한 정보를 상세히 분석해왔다. 이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신빙성 있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권리를 옹호하는 피해자 단체 및 여타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해당 단체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책임 규명 노력을 조율했다. 이탈자 면담, 공개 정보 검토,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수집한 정보의 양, 질,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 B. 중앙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 강화

24. 중앙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는 향후 국내 또는 국제 진실과 정의 절차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정보 및 증거를 담은 중앙화된 보관소(archive)로 기능할 뿐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범죄 참가형태(modes of liability), 잠재적 가해자 파악을 가능케 하여 향후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25. 2020년에 실시한 대대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장소 내 정보 및 증거의 보존, 보관, 관리, 처리 역량이 개선되었다. 현재 저장소는 여타 전자 저장소나 데이터베이스와 호환 가능한 다양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수준 높은 틀을 구비하고 있다. 저장소는 복잡한 검색 및 연관성(correlation) 기능을 통해 동향과 패턴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과 평가를 가능케 한다. 또한 증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와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자 데이터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26.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000개 이상의 파일이 저장소에 보관 중이며, 면담, 보고서, 인공위성 영상자료, 지도, 법원 서류, 동영상, 녹음 자료, 청원 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모든 현존 자료와 더불어 조사위원회 기록도 전부 포함된다. 정부, 학계, 공개 출처 등의 기타 관련 자료도 보관하였다. 저장소의 모든 정보는 향후 분석 과정의 효율 증대를 위해 장소, 관련 정부기관, 잠재적 범죄 등의 매개변수(parameter)를 기준으로 태그 및 분류되어 있다.

2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잠재적 국제 범죄 등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통해 저장소에 자료를 기여하도록 독려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기여한 자료에는 증언 및 기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제작된 영상 및 음성 기록물, 각종 소송 절차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 단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여타 특별 절차에 제출한 768개의 청원서를 2020년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모두 전달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국제 범죄 조사 기준에 대한 기술 자문도 제공했다. 이는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서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안전한 수집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했다. 한인 “송환자” 중 다수는 38 선 이남 출신으로, 한반도 분단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단, 이 중 6,730 명은 제일 한인의 일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이다.

28.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업무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국제공동체가 조화롭게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회원국 및 여타 유엔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한민국 및 제네바 외교계를 대상으로 진행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했다. 일본과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인권 침해 기록 및 조사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을 만나 저장소에 정보를 기여할 것을 권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등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29. 저장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진실, 정의, 배상 실현과 책임 규명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 투자이다.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방대한 정보를 유엔 관리 하의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에 통합함으로써, 저장소는 책임 규명 목적의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0.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향후에도 저장소를 유지하고 채워 나가 국제적 모범 관행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보관이 가능하도록 인권이사회가 앞으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및 잠재적 반인도범죄에 대해 취득·평가하고 저장소에 보존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할 일이 상당히 남아 있다.

3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가 모두 형사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증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나, 정보의 총체적 분석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가장 강력한 정보 및 가용 증거와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외관할권이나 보편관할권을 적용하는 곳을 포함한 국제, 혼합(hybrid) 또는 국내 재판소의 검사는 상기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 증거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검찰 및 사법 당국은 기존 유엔 절차에 따라 저장소 내 정보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 저장소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정보원(情報源)이기에, 특정 인물과 관련하여 사실상 무죄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32.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및 잠재적 반인도범죄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포괄적인 책임 규명 조치가 필요하다. 저장소의 정보는 사법적 책임 규명 메커니즘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비사법적 보완 조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해당 조치에는 정확한 역사 기록, 기념화, 배상, 진실 말하기(truth telling) 등이 포함된다.

###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3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위임권한 수행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책임 규명 사안에 대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뒀으며, 법적 책임 규명을 모색하고자 하는 파트너를 지원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국제 법률 공동체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활용될 전략 모색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마련했다.

34. 이를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9년 4월에 정부 대표, 변호사, 학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 기록과 모니터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책임 규명 노력의 진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35.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책임 규명, 보편관할권, 기업 책임, 자산 추적, 금융 범죄 수사, 피해자 중심 정의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자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잠재적 책임 규명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형사, 민사, 기업 책임 규명 분야의 전략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책임 규명 업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및 유엔과 협력하기를 원했다. 참석자들은 옹호 활동과 인식 제고가 사법적 책임 규명 절차의 중요한 보완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이니셔티브를 조율하는 데에 있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주목하였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후속 행사를 2021년으로 연기해야 했다.

36.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한민국의 형사 및 민사 사건과 일본의 민사 절차를 비롯한 사법 절차를 모니터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0년대 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억류되었던 국군포로 남성 두 명이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국군포로 각각에게 17,600 달러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권력 상태의 판결이 피고를 상대로 선고되었다.<sup>3</sup> 2018년 8월 일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이탈한 “지상낙원” 사업의 여성 피해자 네 명과 남성 피해자 한 명이 해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약 964,000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다.<sup>4</sup> 상기 사건들은 책임 규명의 한 형태로서 긍정적인 성과이나, 청구인들은 정보 및 증거 확보, 사법 절차 중 피고 대상 송달과 피고인 출석, 그리고 판결 이행을 위한 압류 가능 자산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조 부재가 주된 이유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역외관할권 책임 규명을 비롯한 책임 규명 전략(initiative)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 변호사와 더불어 일본, 대한민국과 여타 국가의 국내 변호사 및 피해자 단체와도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

3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미국에서 오토 워비어 가족이 진행하는 소송을 주시했고, 2019년 1월에 해당 가족과 만난 바 있다.<sup>5</sup> 미국의 한 법원은 2018년 권력판결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토 워비어를 인질로 잡고, 고문하고, 초법적 처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워비어 가족에게 5억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시했다. 2020년 5월에 법원은 해당 판결을 이행할 수단을 살펴보기 위해 은행 세 곳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결자산 보유 계좌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38. 현재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주된 방법은 여전히 국내 사법 절차이다. 해당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거나, 임시 재판소 또는 기타 유사 메커니즘이 설립되지 않는 한 당분간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역외관할권 원칙에 따라, 회원국은 범죄에 해당하는 일부 인권 침해의 경우 자국 영토 밖에서 발생했다라도 국내에서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주목한다. 가령 관할권을 행사하는 회원국의 국민이 침해 피해자인 경우 역외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중대한 인권 침해는 보편관할권 원칙 하에 일부 회원국의 국내 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회원국과의 적절한 연관성(nexus)이 법적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검찰 기관과 회원국에게 잠재적 국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할권 행사를 허용하는 모든 법률적 방안을 국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모색하고, 이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배상 및 구제 권리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39.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강제 실종 및 납치 관련 책임 규명 전략도 모색하고 증진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납치 사례와 이후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일본과 대한민국 등의 국가에서 납치된 해외 국민 사례에 관한 증거를 분석했다. 또한 실종자 다수의 거주지나 생사에 관한 정보 제공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과, 이로 말미암아 주로 일본과

<sup>3</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한민국 내 동결계좌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취하고자 하는 원고 측 변호인단의 노력을 주시하고 있다.

<sup>4</su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1차 공판이 연기된 관계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sup>5</sup> 오토 워비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감 시설에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7년에 미국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영향을 살폈다. 이에 더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지속성을 띠다고 볼 수 있는 해당 범죄가 그 지속성을 이유로 국제 형사 재판소들의 관할권에 귀속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피해자단체를 비롯한 일본과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를 국제 형사법 전문가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전문가들은 상기 사안과 관련하여 국제 형사 재판소들에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40. 한국전쟁 도중과 이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sup>6</sup> 당시, 그리고 “지상낙원” 사업의 일환으로 납치된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는, 많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고통의 점을 감안하여 진실 규명 및 가해자 책임 규명이 시급한 점을 강조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아리모토 카요코와 요코타 시게루의 사례에 주목한다. 이들은 40여 년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녀의 생사를 여전히 모른 채 2020년에 타계했다. 이들 사례를 통해 강제 실종과 납치 피해자 가족이 평생 고통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회원국에게 위와 같은 사건, 특히 피해자가 자국 국민이거나 해당 범죄와 여타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 등을 국내 사법제도 하에서 조사할 방도가 있는지 살필 것을 촉구한다.

41.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불법 자산 추적과 압류 또는 몰수를 통해 금융 책임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해당국이 금융 및 기타 기관 대상의 사이버공격 또는 원자재·노동력 수출을 통해 취득한 외화에 관한 상당량의 문서를 여러 단체가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해당 행위가 잠재적 반인도범죄를 비롯한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적절한 경우 배상의 목적으로 자산 파악 및 압류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금융 수사 전문가들이 더욱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IV. 주요 결과

42.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모든 잠재적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와 국가보위성 및 인민보안성<sup>7</sup>이 운영하는 일반 수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례도 포함된다. 일반 수감시설은 로동단련대, 구류장, 집결소 및 교화소를 포함한다. 최근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직접 증언은 드문데, 이는 정치범이 석방되는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석방된다 하더라도 밀착 감시를 당한다. 따라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이차 정보 및 공개 출처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서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4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치범 수용소 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최근 가장 많은 직접 정보를 확보한 범죄, 즉 일반 수감시설 내 구금, 고문, 노예화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탈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이 중 다수는 중국에서 송환된 경험이 있다.<sup>8</sup> 무역을 위해 북쪽 국경을 건넌 사람 중 다수는 결혼한 여성이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상근직에 배정받지는 않았으나 가정 수입을 점점 많이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강제 결혼이나 성·노동 착취를 위해 이웃 국가로 인신매매 당할 가능성이 더욱 많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는 북쪽 국경에 면한 두개 도(道) 출신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구금되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타 지역 주민이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sup>6</sup>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되었다. 39명의 승객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으나,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은 결국 송환되지 않았다. 송환되지 않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sup>7</sup> 인민보안성의 명칭은 2020년 6월에 사회안전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진다.

<sup>8</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여전히 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2020년 7월 28일.



44.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몇 년간 일반 수감시설 내 수감자 대우가 일부 개선되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 체제 및 지도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국 정부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일삼는다는 조사위원회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는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위협으로 여겨지는 이들이란 신앙생활을 하거나, 외국 영화나 음악 등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는 문화를 도입하거나, 해당국을 떠난 사람을 포함한다. 상기 방침과 같은 취지로 해당국 주민들은 적법절차 없이 체계적으로 구금 당하며, 기본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 정치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저지하고 처벌하는 방침의 일환으로 이탈자들은 구금 중에 고의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45. 일반 수감시설 관리 책임을 맡은 주된 국가 기관은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내 의사결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으며 명령체계가 중첩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부의 지방, 지역, 국가 상급 관리들은 가장 직급이 낮은 교도관이나 유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하급자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할 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인권 침해가 수감자 대우 방침에 따라 가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관리는 상급자-지휘관 책임 원칙에 의한 직접 참가자로서, 또는 공동범죄집단의 일부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범죄행위까지 이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책임 있는 개인을 파악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 업무와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있어 회원국 등 주체들 간의 협력과 정확한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 A. 구금

46.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들과 진행하는 면담에 의하면 일반 수감 시설 내에서 구금에 해당하는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

47. 단기간 중국에 가는 등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범죄 혐의가 있던 면담대상자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구금되고, 국가보위성 관리에게 조사를 받고, 재판 없이 행정 결정에 의해 곧바로 로동단련대에 이감 후 최대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48. 보다 중대하다고 여겨지거나 정치적 요인이 있는 범죄 혐의가 있던 면담대상자들은 국가보위성에서 인민보안성으로 이감되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대부분을 위배하는 사법 절차를 거쳤다. 많은 경우, 기본적인 인권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자국을 떠날 권리, 신앙 생활을 할 권리, 전화통화 또는 타국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신하고 공유할 권리 행사 등의 이유였다. 다수의 면담대상자는 변호인을 본 적이 없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술했다. 변호인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본인을 충분히 변호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법정 심리 전에 훈계를 하거나 서면 “자백”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만 나타났다고 말했다.

49. 주어진 정보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후 돌아가거나, 송환되거나, 떠나려는 시도를 한 이들은 체계적으로 일반 수감 시설 내에서 기본권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박탈 당한다. 특히 이들 목적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상기 이유 또는 여타 정치 범죄를 이유로 구금된 면담대상자는 국외에 단기간 머무르거나 비정치 범죄로 인해 구금된 이들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50.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관리가 지속적으로 국제법 기본 규칙을 위반하여 개인을 구금하거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면서, 기본 인권 행사를 범죄화 하고 가장 기초적인 공정한 재판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 만약 조사위원회가 시사한 바와 같이 상기

행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및/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발생했다고 권한 있는 법원이 판단하면, 이는 반인도범죄 중 구금에 해당할 수 있다.

## B. 고문

51.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구타,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세(stress positions), 굶주림을 통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피로움을 체계적으로 가한 사례에 대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했다. 해당 정보는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재확인 해주며 일반 수감 시설 내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들 중 국가보위성 및/또는 인민보안성에 의해 구금된 경험이 있는 이들 대부분은 조사 도중 또는 가벼운 위반행위를 이유로 구타 당했다고 진술했다. 한 면담대상자는 수감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맛이 없어 “고추 몇 개”를 숨긴 한 여성이 이로 인해 관리들에게 방 건너편까지 발로 차이고 심하게 구타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53. 교화소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을 살았던 한 면담대상자는 수감자를 구타하는 것이 오히려 “수감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을 교도관들로부터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수감자의 형기가 연장된다는 말이었다. 한 교도관은 해당 면담대상자에게 본인은 수감자를 구타하고 싶지 않으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고, 수감자가 도주하려 할 경우 본인이 강등 당하므로 도주를 시도하지 않으면 덜 가혹하게 대우하겠다고 했다.

54. 일부 면담대상자는 미결구금 시설에서 여전히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는” 고문 형태가 사용된다고 진술했다.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는 동안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교도관과 용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시선을 마주칠 경우 교도관에게 구타 당하거나 교도관의 강요를 받은 다른 수감자에게 구타를 당했다. 또한 교도관들은 많은 횟수의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는 등 어려운 신체 활동을 강요하며 감방 내 수감자 전원에게 벌을 주었다. 수감자로 하여금 감방 철창에 본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특히 지독한 벌도 있었다. 이를 겪은 한 여성 면담대상자는 교도관으로부터 머리 부딪치는 소리가 감방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기절할 때까지 머리를 부딪칠 것을 강요 받았다. 일어나 몸을 펴거나 화장실 사용을 위한 휴식 시간의 빈도는 전적으로 교도관의 호의나 기분에 달려 있었다. 때때로 수감자들의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어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있던 자리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고 일부 면담대상자는 진술했다. 이런 환경은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세에 심리적 요소까지 더해 수감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아를 완전히 통제한다. 비교적 최근에 이탈한 이들은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는 것을 감시카메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55.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만나본 거의 모든 면담대상자는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일관되게 수감자는 충분치 못한 양의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일을 못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로 식사량을 더욱 줄이기도 했다. 수감 경험자들은 예를 들어 하루 세 번 강냉이 200알, 또는 삶은 강냉이밥 한 움큼을 받았고, 이외 딱히 제공받은 것은 없다고 얘기했다. 면담대상자들은 영양실조를 겪거나 체중이 심하게 감소했으며, 여성의 경우 생리 중단을 겪었다. 일부 수감자는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56. 국가보위성의 일차 조사를 거친 후 인민보안성으로 이감되는 수감자는 가족에게 음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대상자에 의하면 교도관들은 간혹 음식을 본인이 챙기거나, 별로 수감자에게 주지 않거나, 수감자가 음식을 수령하고자 하면 뇌물을 더 요구했다. 한 면담대상자는 항소를 희망한 것에 대해 별로 외부 음식을 모두 차단 당했다. 더욱이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이들이나 가족이 음식을 제공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이들은 영양을 보충하지 못한 채 시달려야 했다.

57. 일부 면담대상자는 수감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단, 가족이 모든 의약품을 제공하고 의사를 매수한 경우는 예외였다. 일부 면담대상자는 의료 지원 부족으로 사망하는 수감자를 목격했다. 면담대상자는 극심한 추위와 끔찍한 위생 환경을 묘사하며, 여성은 생리 위생용품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58. 소수의 면담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최소한 몇 개의 구금 시설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신체적 대우가 일부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면담대상자는 수감자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 행위로 징계받은 교도관이나 관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 남성 면담대상자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달한 바에 의하면 국가보위성 검사가 본인이 2019년에 수감된 시설을 한 달에 한 번 점검 차 방문했는데, 검사가 방문하는 날은 평소와 다르게 수감자에게 비누가 제공되고 이발을 했으며, 점검자가 떠날 때까지 난방을 더 세게 틀어줬다. 과거 교화소 교도관으로 일한 남성이 2019년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하기를 구타행위는 감소했고, 인민보안성이 수감자 구타 금지 지침을 내렸으며, 본인도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남성은 2015년에 두 명의 교도관이 수감자를 구타한 이유로 강등당하고 급여가 삭감되었다고 했다.

59. 상기 예시는 최소한 몇 곳에서는 구타와 학대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구금과 고문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본질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미미한 개선에 불과하다.

60. 구타,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세, 정신적 학대, 강제 노동, 의료 지원과 위생·청결용품 미제공, 굶주림 등이 결합되어 구금 중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이는 극도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이같은 학대에 대한 다수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리들이 담당 수감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했으며 현재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존재한다. 만약 조사위원회가 시사한 바와 같이 상기 행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및/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발생했다고 권한 있는 법원이 판단하면, 이는 반인도범죄 중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 C. 노예화 및/또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

61.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반 수감시설에서 특별히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 노동이 발생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반인도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

62. 국제법에 따라, 권한 있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한 경우 중노동은 여타 인권과 양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의 처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법인격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가중적 요인이 수반된 강제 노동을 취할 경우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sup>9</sup> 노예화가 인정되기 위한 관련 조건으로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통제의 정도, 도주를 방지 또는 처벌하기 위한 조치, 폭력 및 학대, 노동의 조건 및 강도 등이 있다.

63. 다수의 면담대상자는 재판 없이 행정 절차에 의해 노동단련대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처한 상황을 진술했다.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교화소에서 강제 노동에 처한 이들도 있었다. 자국을 떠날 권리, 타국에서 정보를 수신할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이를 “범죄”로 보고 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sup>10</sup>

64. 면담대상자들은 건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및 유사 형태의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비롯한 강제 노동에 대해 진술했다. 한 여성 면담대상자는 2014년 교화소에서 형을 살 당시 농사일을 강요당했다. 사람을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 부린 것을 묘사하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소가 끄는 수레를 사람 7-8명이 끌었다”고 말했다.

<sup>9</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상세 보고서,” 문단 1048. [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ReportoftheCommissionofInquiryDPRK.aspx](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ReportoftheCommissionofInquiryDPRK.aspx) 참조.

<sup>10</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미결 구금 중 강제 노동에 처한 개인에 관한 진술도 받았다.

뜨개질, 금속 조립, 인조 속눈썹과 목걸이 고리 제작 등 제조업도 강제 노동에 포함되었다. 또한 면담대상자들은 외화벌이 담당 국영 기업이나 국가보위성 및 인민보안성 관리 등의 개인 살림집에 파견되어 일하기도 했다.

65. 면담대상자들이 묘사한 강제 노동은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발생했다. 극도로 긴 노동시간, 최저 연명 수준 이하의 배급량,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 및 위생환경, 의료 지원 미제공, 가벼운 위반행위나 업무 할당량 미달로 인한 빈번한 구타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수감자들은 대대적으로 자기 비판을 하거나, 항상 몸을 숙인 채 걷고 교도관이 지나갈 때 인사하지 않으면 구타 당하거나, 구타에 저항하지 않는 법에 대해 학습하거나, 사망한 수감자의 무덤을 파도록 강요 당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도 당했다. 도주를 시도한 이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다른 수감자에게 구타 당하는 등의 심각한 대가를 치렀다. 다수의 면담대상자는 환경 개선, 덜 힘든 노동 또는 석방을 위해 뇌물을 제공했고, 이는 강제 노동 제도의 만연한 부패와 자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66.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대상자들이 설명한 강제 노동 환경을 관련 법적 기준에서 분석 시 수감자 통제의 정도, 이동의 자유의 전면 부재, 도주 저지·처벌 조치, 비인도적 환경과 신체적 폭력 및 정신적 위협 사용, 그리고 수감자 노동으로 국가 기관 및/또는 개인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 등에 주목한다. 만약 조사위원회가 시사한 바와 같이 상기 행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및/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발생했다고 권한 있는 법원이 판단하면, 이는 반인도범죄 중 노예화 또는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sup>11</sup>에 해당할 수 있다.

6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대상자들이 기술한 강제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차후 업무 단계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 노동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 V. 결론

68. 가용 정보의 분석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고 여전히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반인도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과거 및 현재도 지속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반드시 이러한 침해 행위가 종식되고,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 권리가 실현되고 재발 방지가 보장되어야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69.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의 해당 상황 회부를 통해서든, 임시 재판소 또는 기타 유사 메커니즘 설립을 통해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혐의 기소를 우선순위로 뒤야 한다. 동시에, 반드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보존하여 전(全)단계의 책임 규명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역외관할권 또는 보편관할권을 기반으로 한 국내 절차나 향후 국제적 책임 규명 절차도 포함된다. 정보의 수집, 분석, 보존은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비사법적 보완 조치를 지원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해당 조치로는 역사 기록, 기념화, 배상, 진실 말하기 활동 등이 있다.

70. 일본, 대한민국, 미국 내 소수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국내 법원을 통해 정의 구현을 모색했으나, 아직까지 이런 조치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협조적인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임시 재판소나 기타 유사 메커니즘 설립은 책임 규명의 보완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하는 기초작업, 특히 정보 수집, 기록, 인식 제고는 상기 접근방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sup>11</sup>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 7(1)(k)조 참조. 국제형사재판소 범죄 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제 7(1)(k)(1)조 참조.

71. 인권이사회는 책임 규명 전담 조사팀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힘입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제법 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들 비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목표로 의미 있는 준비작업을 이행할 수 있다. 책임 규명 전담 조사팀은 국제 형사법 전문가 및 정보·증거 관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 많은 자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 규명 전담 조사팀을 위한 추가 자원 덕분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반인도범죄 혐의 및 여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의 기록과 보존, 정보 및 증거 저장소의 설립과 축적,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국제 형사법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72. 인권이사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 규명 업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서울 및 제네바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더하여 국제 형사법, 법률 통역 및 정보 관리 전담 전문가가 합류한다면, 관련 형사법 관점에서 모니터링, 기록, 분석을 강화하라는 위임권한을 보다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다.

## VI. 권고

73. 결의 34/24 및 40/20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최고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한다. 이 때 해당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도록 한다.

(b) 국제 인도주의단체 및 인권 감시 요원이 모든 구금 시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시 허용한다.

(c) 국제 인권 규범 및 기준에 부합한 방식으로 형사사법 관련 법률 및 사법부, 법 집행 제도, 교정 제도 등의 법치 기관 개혁에 착수한다.

(d)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충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이고 성 인지 관점을 반영한 배상 및 구제를 보장한다. 이 때 인권 침해에 관한 진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e)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 조약 및 인권 제도를 모두 비준한다.

74. 결의 34/24 및 40/20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최고대표는 회원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국제적 책임 규명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한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 국제재판소 또는 기타 유사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b)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인권에 마땅히 우선순위를 두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재발 방지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한다.

(c) 가능한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제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수사 및 기소하며, 이때 역외관할권 및/또는 보편관할권 원칙을 근거로 한 방안도 활용한다.

(d)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인권이사회 결의 34/24 및 40/20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개인에 대한 접근 및 관련 증언, 문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가능케 하는 것을 포함한다.

(e) 시민사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는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피해자 단체 및 여타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사회 공간을 의미한다.

(f) 인권이사회 결의 34/24 및 40/20 관련 정보를 회원국이 적절한 조건 하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75. 결의 34/24 및 40/20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임시 재판소나 기타 메커니즘 설립은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책임 규명 전담 조사팀이 결의 34/24 및 40/20의 이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해당 위임권한의 2년 연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상기 결의의 이행이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모니터링 및 기록 노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발전시키고,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76. 결의 34/24 및 40/20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최고대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자행된 인권 침해 및 반인도범죄 의혹과 연관된 정보의 수집, 기록, 보존을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